

2022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1) 일 사: 2022. 5. 3. (화) 12:00 - 12:50
- 2) 장 소: 법인 사무처 회의실
- 3) 진행방식: 다자간 메신저(카카오톡)
- 4) 회의 소집 통지 내용
 - 통 지 일: 2022. 4. 20. 수.
 - 통지대상: 이사 13명, 감사 2명
 - 통지방법: 카카오톡 단독방을 통한 회의 일정 및 목적 보고 공문
 - 회의목적: 정관변경,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 5) 참석인원: 이청자, 조덕자, 김수자, 김종인, 문동팔, 권태근, 김상용, 김태진, 정은아, 여삼열
(재적이사 13명 중 10명), 장대익(재적감사 2인 중 1명) 합계 11명 참석
- 6) 회의안건: ① 정관변경
②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
③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2. 회의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 이청자 이사장 : 재적이사 13명 중 10명, 재적감사 2명 중 1명, 총 11명의 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으로 2022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청자 이사장 : 먼저 전차 회의결과 보고 후 의결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모두 3건으로, 정관변경(안),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45명→35명),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전차 회의록 보고 】

- 이청자 이사장 : 전차 회의록과 안건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 정혜선 사무처장 :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고, 전회 논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다.
- 이청자 이사장 :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동팔 이사 :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 여삼열 이사 : 재청합니다.
- 참석 이사 : 전원 찬성하다.
- 이청자 이사장 : 전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보고 사항 】

이청자 이사장 : 3월23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관변경 안이 사업의 종류 보완이 필요하여 반려되었고, 정관변경 지연에 따라 법인설립인가증의 대표이사 변경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의 재위탁 운영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에 있고,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은 8월 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ZOOM으로 진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은 5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제1호 안건 : 정관변경(안) 】

- 이청자 이사장 : 제1호 안건은 정관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이 승인되어 관할 청에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정관의 목적사업을 법령에 근거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반려하였습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완한 개정 비교표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명칭) 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REHABILITATION FUND"로 하고 약칭은 "K.R.F."로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지원사업 2.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사업 및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홍보, 교육, 간행물 발간사업 4.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 및 설치 운영 5. 사회복지관 수탁 및 설치 운영 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 7. 지역자활센터 운영 8.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제2조(명칭) 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Rehabilitation Foundation"로 하고 약칭은 "K.R.F."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2.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운영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의 활동지원기관 운영 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의 4항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5항의 사회복지관 운영
제5조(자산의 구분)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제5조(자산의 구분)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u>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u> 1. [별표 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u>평가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u> 1. <u>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u> 2. 부동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u>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금액은 '별지 1'과 같다.</u> <u>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u>
제6조(자산의 관리)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u>1월말까지</u>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u>3월말까지</u> 전년도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u>법규</u>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u>법령</u>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u>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u>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⑦ 감사 중 1명은 (중략)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u>사·도·사회보장위원회</u>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⑦ 감사 중 1명은 (중략)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및 「<u>공인회계사법</u>」 제23조, 제4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5. 중략	제21조(임원의 직무) ⑤ 좌동 <u>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u>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u>추대하여</u>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5조(고문 및 자문위원)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u>추대한다.</u>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u>전원이 기명·인감</u>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u>전원이 날인</u>하여야 한다.
제32조(수익사업) ① 생략	제32조(수익사업) ① 생략

1. 연말연시 카드판매사업 2. <u>행복플러스가게 운영</u> 3. <u>재난안전교육사업</u> 4. 그 밖의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각종 수익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중략)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1. 좌동 2. <u>카페 운영</u>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사업 4. 좌동 ② 좌동
제33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 복지시설 운영목적으로 사용한다.	제33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u>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u>
제38조(시설장 및 직원) ① 법인 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함)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에 대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설장의 채용·인사·보수·복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상근임직원) ① 법인 사무처 및 시설에는 필요한 <u>상근임직원을 둔다.</u> ② <u>상근임직원</u>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u>정년을 규정</u>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좌동 ⑤ <u>상근임직원</u>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공고의 방법) ② 제 1항의 공고기간은 <u>20일</u> 이상으로 한다.	제43조(공고의 방법) ② 제 1항의 공고기간은 <u>7일</u>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2] 또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별지 2], 현임원 [별지 3]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4]와 같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임원의 선임, 예산편성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 등은 이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다.	삭제
제4조(법령 등의 우선적용) 관련법령 등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 상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별표 1] 기본재산목록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1] 기본재산목록

[별표 2]설립당시의 임원 (부칙 제2조 관련)	[별지 2] 설립당시의 임원
[별표 3]법인이 사용할 인장 (부칙 제2조 관련)	[별지 3] 현임원
	[별지 4] 법인이 사용할 인장

[별지 3]

현임원

연번	직 위	임기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비고
1	대표이사	20.07.15-23.07.14	이청자			
2	이사	20.07.15-23.07.14	조덕자			
3	이사	22.01.01-24.12.31	문희중			
4	이사	22.01.01-24.12.31	윤영노			
5	이사	20.03.23-23.03.22	김수자			
6	이사	22.01.01-24.12.31	김종인			
7	이사	21.04.01-24.03.31	문동팔			
8	이사	20.12.24-23.12.23	권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비공개 함.	
9	이사	20.07.15-23.07.14	김상용			
10	이사	20.07.15-23.07.14	김태진			
11	이사	20.07.15-23.07.14	정은아			
12	이사	20.07.15-23.07.14	여삼열			
13	이사	21.04.01-24.03.31	안장혁			
14	감사	21.01.01-22.12.31	김호순			
15	감사	21.08.01-23.07.31.	장대익			

•문동팔 이사 : 정관변경에 동의합니다.

•권태근 이사 : 재청합니다.

•참석 이사 : 전원 찬성하다.

•이청자 이사장 : 정관 29조에 의거 모든 이사님이 찬성하였기에 해당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 제2호 안건 :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정원 변경 】

•이청자 이사장 : 광명시지역아동센터의 현 정원을 45명에서 35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광명동이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거주민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이용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조덕자 이사 : 동의합니다.
- 여삼열 이사 : 재청합니다.
- 참석 이사 : 전원 찬성하다.
- 이청자 이사장 : 정관 29조에 의거 모든 이사님이 찬성하셨기에 해당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 제3호 안건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

- 이청자 이사장 :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추경예산 승인의 건입니다. 프로포절 선정으로 인해 17,000천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총액 369,700천원→386,700천원)
- 조덕자 이사 : 동의합니다.
- 김상용 이사 : 재청합니다.
- 참석 이사 : 전원 찬성하다.
- 이청자 이사장 : 정관 29조에 의거 모든 이사님이 찬성하셨기에 해당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 폐회선언 】

- 이청자 이사장 : 다른 안건이 없음으로 2022년 정기이사회를 폐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2시50분 산회)

대표이사 이청자



이사 조덕자



이사 김수자



이사 김종인



이사 문동필



이사 권태근



이사 김상용



이사 김태진



이사 정은아



이사 여삼열



감사 장대익

